

모인의 권모의치

모인의 권모의치

개념

개념

□ □ 노인대학 운영과 교수

○ 노인복지대의 장

○ 노인복지대의 장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학대의 법적 대응 방안

○ 노인학대의 법적 대응 방안

○ 신재학대

○ 신재학대

○ 2007. 12. 10. 10월 10일 학회

○ 2007. 12. 10. 10월 10일 학회

2
3
4

구체적 행위		중 상	하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구하지 않는다 ■ 양물을 불충분하게 먹는다 ■ 최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씻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병만 치료하지 않는다 ■ 아산 시 등의 위지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향, 태सन, 빈설, 노인 죽임 환경에 있어서 건강가, 노인에게 권면되어 위험한 중추가 있다 ■ 미리, 수단, 손발 등이 자라서 적발될 수 있다 ■ 용량이 있다. ■ 병마, 음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약제가 있다. ■ 의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 의도적범인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 ○ 보살구(구토창기, 압노체로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활비 지런 단결 ○ 비위생 기구 제공 ○ 개인위생 방지(아산) 때를 거둔 불거는 노인)
		■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 안력이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젖어있 습 또는 깨열에 벗겨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의복을 침하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연결되어 있다	○ 단결 ○ 전기, 가스, 수도 단결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기구 불거는 노인에게 중범적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원조 ○ 탈수상태 ○ 인위적 ○ 병력조별(1년 이상) ○ 노인회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지 ○ 주택 내외의 등 ○ 기를 못 쓰지 않음

○ 자기방영 ○

구체적 행위	증 상	위험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청력,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권리 하차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대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가사를 생략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가산적인 보 호 조치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의도적으로 거부로 생명 에 위협 조해 ☐ 자해 ☐ 자살 기도 ☐ 사망 ☐ 기타

☐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illegible]

사건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企上

○ 대상

- 10월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신교의무자
○ 의로벌 제3차제왕의 의로기전에서 의로인을 행하는 의로인
※ 의로기전 : 중한병연, 병연, 치과병연, 한병병연, 여한병연, 노인전양병연, 의연, 치과
의연, 한의연, 조선연
※ 의로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선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지원조사원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고 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권리
 - 신고자의 신분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나 노를하지 않으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라준다.
 -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위험 신고지 처리
 - 상담원은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인에게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함
 - 신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함을 알려줌(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 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사례로 접수되지 않고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없을 것을 알려준다.

■ 접수 방법

-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99 운영
- 노인학대에발생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직접 방문 상담 접수
-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 서신에 의한 접수
-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 신고 접수 고려사항

-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 일회성 노인성당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접수하여 환경조사를 통한 노인학대 판정 및 자학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 학대위험사태인지 일반사회인자 판단하기 위한 노인학대 피해자, 학대행위자의 기본정보 및 구체적인 학대 유형, 빈도, 정도를 조사한다.
 - 판단은 노인학대 사정 및 판단 기준에 의해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자가 결정하되, 자체 사례회의의 또는 동료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활용한다.

■ 환경조사 및 사정

■ 환경조사

- 1) 목적
 -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한다.
 - 피해 노인에 대한 신분보장과 안전조치를 한다.
 -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 지원체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환경조사가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 피해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나 노인의 안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노인학대사례 여부의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 피해노인 본인 및 상담 의뢰자가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
-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환경조사가 필요하다고 사정되는 경우
- 기타 사례회의 등에서 추가 정보수집에 대한 필요가 확인된 경우

3) 환경조사 시 주의 사항

- 2인 이상 동행하여 방문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협조를 구한다.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음기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가정 내 출입을 강제로 취하기보다, 유연한 조사가 되도록 조사방법을 강구한다.
- 가능한 한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직접 대면한다.
- 상담원은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거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삼간다.
- 지속적인 방문은 신체 학대만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루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파악한다.
-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 방문으로 인해 노인에게 발생할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환경 방문할 상담원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성 보장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한다.
- 학대행위자 및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가의 안전을 위협할 목적의 의사, 정신장애, 알코올, 약물남용 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접촉 전 취할 방법을 준비한다.
-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 증가 및 중안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4) 중인의 확보

- 노인학대 상황을 설명하는 중인의 말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중인의 중안 내용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학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중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촉하였는지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 중인의 연락처(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 핸드폰)를 반드시 받아놓도록 한다.

- 사례의 위급성 여부 판단
 - 위급한 사례로 판단되? 12시간 내에 환경조사를 실시하되, 단독으로 환경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함하도록 하며, 단순노인학대 사례는 48시간 내에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2시간 내에 환경조사가 어려운 경우 사례의 위급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서의 경찰관, 시·군·구 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우선 협조를 구하되,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상담자 이외의 자의 협조를 받아 환경조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조사지(거)로부터 조사결과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독 의뢰 또는 아전 상담기록 확보

- 이미 접수되었던 사례인지 중독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대유형이나 학대행위자가 다른 경우 새로운 신고사례로 접수하여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한 가정 또는 시설에서 두 명 이상의 피해노인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노인에 따라 각각의 신고사례로 접수한다.

노인학대 사정에서 고려할 점 (Ammerman & Hersen 1999)

■ 접근 (Access)

사정 요소	사정방법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는 전문가의 접촉을 꺼려함: •학대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함 (예: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 못하도록 위협)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며 학대행위자를 보호하려 하거나, 신뢰받지 못할 것을 겁내며, 보복, 욕, 사별수용을 두려워하며, 상황을 정면적으로 받아들이 포기한다. •필요하다면 접근시도는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시도한다. •가정방문: 학대행위자가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가해적이라면 전문가의 주위가 요청 된다.	•포리더버서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면접을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가? 한지와 가족의 분리 상담을 위하여 면접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접근 시도 시 전문가의 도를 믿음만한 타인이 존재하는가? 이전에 다른 전문가가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접했는가? •가정방문: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가의 안전을 위협할 목적의 의사, 정신장애, 알코올 약 남용 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접촉 전 취할 단계는 무엇인가?

■ 인지상태 (Cognitive Status)

사정 요소	사정방법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법적 능력이 상한 경우? 아니면 피해자는 전문가의 접촉을 거부하고 학대상황에 남아 있을 관리할 것인가? •다수의 피해노인들은 혼란, 기억상실, 인지상실 등의 피해자화 (Victimization) 된 양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문제들은 우울, 과도한 공포 불안 등을 유발한다.	•노인의 인지기능 수준은 어떠한가? 신경인지검사 가 필요한가? 학대상황에 남아 있을 정신적 능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인적 역할 하게 상호작용하는가? •노인은 위험과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가? (예: 학대상황에 남아 있을 것인가? 가족구성원들은 노인이 생활양식 선택능력에 있다고 느끼는가? •만일 인지기능이 상실되었다면 시작단계인가, 전행단계인가? 치료가능성이? 노인은 인지기능 회복을 위한 의욕을 보유하고 있는가? 인지기능의 상실이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 스트레스, 의존성 증가)

II 건강상태 (Health Status)

상황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다수의 학대피해자들은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피해자와 학대행위자는 유사한 정도의 신체적 문제를 갖는다.	-노인의 의료적 문제(영양, 약, 운동량의 상실 등)는 무엇인가? 어떤 요인이 위기상황에서 자기보호 능력을 제한시키는가?
-피해자는 신체적 상태를 '사고로 인한 상처'로 규정한다.(예: 신체적 학대로 인한 멍, 긁힘 등)를 낙담한 상처로 위장).	-노인의 신체에서 나타난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 조란 등 에 대한 한자 가족의 설명은 무엇인가? 이전의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노인의 현재와 과거의 의료 기록들은 무엇이며 조사되었는가?
-학대행위자는 학대의 노출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적절한 의료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	-노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 보조, 계획, 처방약 등 필요로 사용하고 있는가? 가족은 이런 보호를 받으려는 노인의 노력을 방해하는가? 그렇다면 누구인가?
-전문의는 신체적 징후와 증상을 구분한다.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징후(예: 멍, 긁힘, 상처)와 연령과 관련된 신체적 상태(예: 마른가 나 주름진, 건조하고 딱딱한 피부 상태 등)가 동시 나타날 수 있다.	-노인의 의심되는 학대나 의료적 조건과 관련된 신체적 징후와 증상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이 시행되었는가?

III 기능상태 (Functional Status)

상황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기능적으로 의존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학대행위자는 대개 피해, 압도되거나 죄의식을 가지며 책임에 면도한다.	-노인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가 원조를 제공하는가? 그 사람이 보호를 제공하는 이유는 얼마나 자주 원조를 제공하는가? 노인은 원조가 필요하다면 여기는가? 유용한가? 충분한가? 만일 필요시 원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얼마나 심각인가? 원조를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이 일종의 의료, 육구, 자원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일반 피해자들은 학대피해자보다 더 많은 가정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보호제공자가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보호제공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학대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가?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들은 서로 비현실적 기대를 갖기 쉽다.	-노인은 어떤 원조서비스(예: 도시락서비스, 가정도우미원 등)를 받고 있는가? 만일 받고한다면 노인이나 가족은 추가적 사회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가? 누구에게서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라면 왜 인가? 가족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보호를 기절하는가?
-학대행위자는 학대행위자의 주 보호제공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학대행위자는 외부인이 가정 내 원조 서비스 제공 허락을 방해한다.	

IV 정서, 심리적 상태(Emotional, Psychological Status)

상황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피해자와(victimization)의 결과는 우울, 공포, 죄책, 혼동, 불안, 자아존중감의 저하, 무기력, 수치 죄책감을 수반한다.	-노인은 '가정에서 행복합니까?'하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피해자의 비언어적 행동(시인회피, 무표정,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자세)의 관찰은 우울이나 불만의 증거가 된다.	-노인의 감정, 수면, 식욕, 체중감소 등의 변화는 어떠한가? 이런 변화가 노인의 신체조절이나 약물 복용 등과 관련이 있는가?
-부족으로 학대행위자의 유형은 정신장애의 전례를 갖는다.	-노인 및 가족구성원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가?

V 스트레스 (Stresses)

상황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어떤종류, 가족폭력이 학대와 관련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적, 외적, 결혼, 별거, 이혼, 거주지 이전, 가족구성원의 변화, 가까운 사람의 사망, 구약 등의 외부요인이 학대 동기를 야기하기도 한다.	-노인은 갈등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피 해노인에게 최근의 가족의 위치에 대해서 서술하 도록 질문하라. 피해노인은 누구에게 원조를 요청하였는가?
	-가족폭력의 역사가 존재하는가?
	-노인 및 가족구성원이 과도한 알코올이나 불법약 물을 복용하는가?
	-최근 노인의 생활양식이나 건강상태를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회복, 중요한 사람의 사망) 무엇인가?
	-최근 가족이 고독, 관계, 재정, 주거 등과 관련하여 겪은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스트레스가 노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가? 기록들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VI 주거환경 (Living Arrangement)

상황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는 주로 동일한 가구에서 생활하는가?	-만일 노인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왜 그런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거했는가?
-거점일을 위하여 자주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의존하는가?	-점은 누구의 소유나 영의로 되어 있는가? 생활비의 공유정도나 어떠한가?
	-노인은 자신이나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다른 대안적인 주거환경을 고려할 의사가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가?

VII 경제적 상황 (Financial Status)

상황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학대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생활비나 용돈 등을 의존할 수 있다.	-노인의 소득원은 무엇인가? 자신은? 노인은 가족을 의지하여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노인의 요구인가?
-피해자는 비공식적, 비적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자신의 소득이나 자신의 통제권을 양도하기도 한다.	-누가 노인의 재정을 관리하는가? 왜? 기간은? 이는 법적, 비공식적 합성인가? 인은 은행거래를 어떻게 일치되지 않는 총액될 수 있는 보호요구를 기질 수 있다.
	-노인은 필요한 개인 서비스 구매를 할 수 있거나 원하지 않는가? 왜인가?

III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

상황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피해자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망상시 노인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접촉의 본질은 무엇인가? 노인은 접촉의 질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가?
-학대행위자들은 피해자의 친구, 친척, 이웃사회, 사회적인, 전문가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려 하거나 감시한다.	-노인은 자신의 친구, 이웃과의 접촉, 사회활동 등의 정도와 질에 대해 만족하는가? 가족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방해하는가? 노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위기서비스 등을 알고 있는가?
	-노인 및 가족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가족과의 관계를 만족하는가?

IV 학대 및 방임상황 : 빈도, 강도, 의도성 (Abuse & Neglect Status : Frequency, severity, intent)

상황 이슈	사정면접 :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
-학대는 대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도와 빈도가 증가한다.	-학대로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질문을 할 때는 먼저 많은 가족들이 이런 문제를 보편적으로 겪고 있으나 도움을 요청할 필요로 있음 을 먼저 설명한다. 다음은 사례에 따라 다르나 노인에게 적절적으로 해야 할 질문의 예이다.
-일일 학대의 유형은 동시에 발생한다	-누가 당신을 해쳤는가?
(예: 성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수반)	-당신이 원치 않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만지려 하였는가?
-피해자나 학대행위자가 학대임을 부정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당신의 의지와 상반된 일을 누군가가 강요 하였는가?
	-누군가가 허락 없이 당신의 소유를 가져갔는가?
	-당신이 원치 않았는데 당신 소유를 압도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인이 자신이 비참하거나 나쁘게 느껴지도록 소리치거나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사망하였는가?
	-누군가를 두렵게하는가?
	-누군가가 위협, 협박하였는가?
	-한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도움 요청을 기절하였는가?
	-이상의 특종적인 반응을를 요구한다 : 학대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였는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떤 증세였는가? 학대를 조장한 것은 무엇인가? 한자 자신은 학대가 왜 발생했는고 믿는가? 학대로 인하여 노인이 위험에 처해 있는가? 위험한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학대행위자의 성격상인가? 노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노인은 학대를 제지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방법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학대를 제지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누가 도와주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현재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가? 현재 원치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를 원하는가?

노인학대의 이해 - 시설학대 편

Q 시설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 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 유기하는 것을 말함

(2020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헐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경제적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자신이 위험한 상황)



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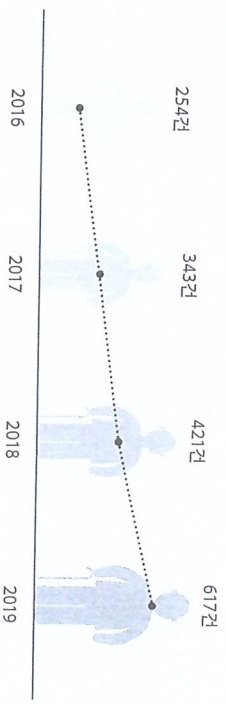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시설학대 현황 *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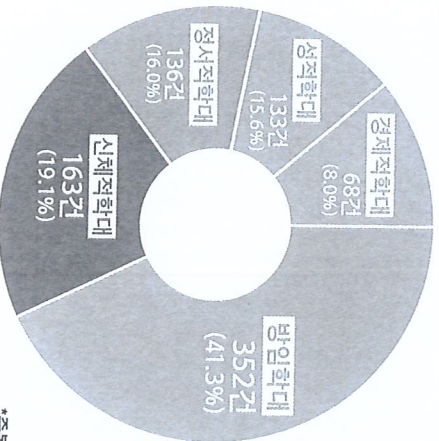
시설학대 건수 (2019년)

구 분	생활 시설		이용 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총 617건	54건 8.7%	432건 70%	3건 0.3%	128건 21%

연도별 시설학대 건수 (2016~2019년)



시설학대 유형



*중복학대건수 포함

시설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시설학대	구 분		치매의심	치매진단	계
	생활 활 용 시 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55명	315명	370명
		노인주거 복지시설	4명	41명	45명
총 617건 (100%)	이용 시 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0.6%	6.6%	7.3%
		-	1명	1명	
		-	0.2%	0.2%	
		7명	83명	90명	
		1.1%	13.5%	14.6%	
계		66명	440명	506명	
		10.7%	71.3%	82%	

신체적 학대

- 기저귀 케어 시 몸을 제압하거나 누른다.
- 체위 변경, 휠체어 이동 등의 과정에서 몸을 함부로 다룬다.
- 사전 동의 및 필요 절차 준수 없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한다.
- 의사의 처방없이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을 먹인다.

개입사례

가 신고접수 :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됨.

나 조사 및 판정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해노인의 몸 위에 올라타 양 팔을 무릎으로 짊어 제압한 사실을 확인함. 해당 요양보호사는 학대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같은 정황이 과거부터 이어져왔음을 확인함.

다 결과 : 행정처분 (지정취소)

요양원은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 결과 지정취소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결되어 폐업됨.

성적 학대

- 기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기저귀를 교체한다.
- 노인의 성적부위를 움켜쥐거나 더듬고 쓰다듬는다.
- 알몸 또는 일부를 벗겨놓은 상태로 목욕 대기를 하게 한다.

개입사례

가 신고접수 : 입소노인의 보호자가 면회과정에서 노인에게 손바닥 크기의 목창이 발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임학대의 의심 신고 함.

나 조사 및 판정

시설은 입소노인에게 발생한 목창이 손바닥 크기로 발견하였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체위변경기록지까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남. 또한 조사과정에서 입소노인 전원이 목욕 이동과정에서 알몸이 노출된 채로 기림막 없이 이동하는 장면들도 CCTV를 통해 확인됨, 목욕 전 과정에서 기림막 사용하지 않음.

다 결과 : 행정처분 (업무정지 3개월)

방임 학대

- 기저귀에 용변을 본 상태로 장시간 내버려둔다.
- 욕창 관리를 소홀히 하고 체위변경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다.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을 제공한다.
- 병원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는다.

개입사례

가 신고접수 : 입소노인의 보호자가 '시설에서 골절진단을 받은 노인의 의료적 처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 신고함.

나 조사 및 판정 : 조사결과, 입소노인A는 아간에 화상실을 가던 중 낙상하여 골절 진단을 받게 됨. 요양원에서는 낙상 및 골절 진단 사실을 약 1주일 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별 다른 의료적 처치 없이 시설에서 지체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됨.

다 결과 : 행정처분 (업무정지 3개월)

시설장은 보호자들이 금전(위로금)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며, 절대 방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 결과, 처분이 마땅하다고 인정. 최종 영업 정지 됨.

정서적 학대

- 요청을 못들은 체하고 대응하지 않는다.
- (물이나 약을 달라,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밥을 더 달라 등)
- 비난하거나 협박을 하며 창피를 주고 고통을 지르며 야단치듯 이야기 한다.
- 반말로 아기에게 하듯 구슬린다. (oo하면 사랑줄게 등)

개입사례

가 신고접수 : 요양병원에서 퇴사한 직원에 의해 간병인들이 노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고접수 됨.

나 조사 및 판정 : 조사결과, 신체적 학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간병인이 노인에게 수시로 '영동하다'고 놀리며, '똥을 많이 싸다'고 무안을 주는 등 노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정서적 학대를 기한 사실을 확인함.

다 결과 :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간병인 위탁업체 엄중 경고, 책임자 문책, 노인학대에반교육 실시)

경제적 학대

- 치매 노인의 재산(현금, 연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종교 시설의 헌금 등)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 등을 구입하게 한다.

개입사례

가 신고접수 : 요양원 원장(목사)이 무연고 입소노인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현금명목으로 인출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됨.

나 조사 및 판정 : 해당 시설은 종사자들이 무연고 또는 보호자 방문이 드문 입소노인들의 기초연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현금 및 공동 물품 구매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다 결과 : 형사고발 및 지자체 감사 착수

시설학대 행정처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의기준)별표 2.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신체적 학대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성적 학대	지정취소	-	-
방임 학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경제적 학대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정서적 학대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